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18

발의연월일: 2025. 3. 25.

발 의 자:조계원·양부남·김현정

이광희 • 민병덕 • 주철현

허 영·김문수·윤준병

임오경 · 김우영 · 허종식

박해철 • 권향엽 • 이재관

박지원 의원(16인)

찬 성 자: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을 시작하기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 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비행 600시간 주기 안전점검을 통과하였다는 사실이 발표됨. 현재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중간점검, 비행 전 후 점검 및 정기점검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항공기 제조사의 지침 등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사고 기종 항공기의 경우 가장 짧은 점검주기는 600시간으로 마모 및 기체 이상에 적절하게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해

당 항공기가 감항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점검의무를 강화하고 점 검주기를 법령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여 여객 안전 확보 및 안전한 항 공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0항 신설 등).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 등은 항공기의 비행시간이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비행시간(이하 "최대비행시간"이라 한다)에 도달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가 감항성을 유지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대비행시간은 항공기의 특성, 운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91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최대비행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제9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에 대한 정비 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5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3조제8항을 위반하여 정비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① ~ ⑨ (생 략)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항공기의 비행시간 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시간(이하 "최대비행시간" 이라 한다)에 도달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가 감항성을 유지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대비행시간은 항공 기의 특성, 운행 상황 등을 고 려하여 100시간 이내의 범위에 서 정한다.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 명 취소 등) ① -----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 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 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 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4. ~ 49. (생 략) ② (생략)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 정 및 정비규정) ① ~ ⑦ (생 략)

<신 설>

제156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 제156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 무 등에 관한 죄) 항공운송사 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신 설>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1. ~ 3. (현행과 같음)
- 3의2. 제23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최대비 행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 4. ~ 49.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 정 및 정비규정) ① ~ ⑦ (현 행과 같음)
 - ⑧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에 대한 정비 기록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 야 한다.
 - 무 등에 관한 죄)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93조제8항을 위반하여

	정비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u>경우</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